

「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0. 8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등(안 제4조)
-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(안 제5조)
- 문화콘텐츠 저변확대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조에서 지자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3조의2에서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관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상위법인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과 「콘텐츠 산업 진흥법」 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5조(지원)에서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명시한

사업 범위 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<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>

1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·제작·기술개발 등 지원
2.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·홍보·마케팅
3.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공간 조성 및 확보
4.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6조(문화콘텐츠 저변확대)에서는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분야가 광범위하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